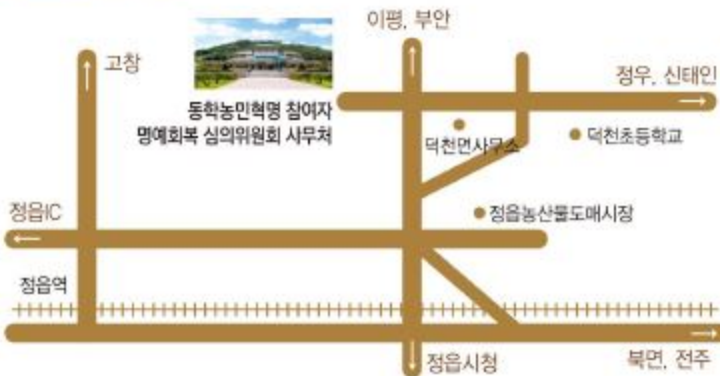


##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

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한 합의제 행정기관이며, 위원회의 운영과 사무처리 업무는 동학농민혁명기념 재단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.

### 오시는 길



### 열차

KTX(정읍 ↔ 서울·용산) 상행 25회, 하행 26회  
 SRT(정읍 ↔ 수서) 상행 14회, 하행 9회  
 새마을호, 무궁화호, 누리호(정읍 ↔ 서울·용산) 상행 18회, 하행 26회

### 고속버스

센트럴시티터미널(정읍 ↔ 서울강남) 상행 15회, 하행 15회  
 동서울터미널(정읍 ↔ 동서울) 상행 3회, 하행 3회

### 시내버스

황토현전적지(버스번호 124) 7회  
 정읍시터미널 → 내장주유소 → 잔다리목 → 덕천사거리  
 → 황토현(동학농민혁명기념관)

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사무처  
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 
 Tel. (063) 538-2897

##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등록 신청 안내



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

##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 안내

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는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 등록 신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유족분들이 빠짐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이웃 등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### 1. 등록신청 대상자

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·손자녀·증손자녀·고손자녀

- ※ “동학농민혁명참여자”란 1894년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봉기하고, 같은 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재봉기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참여자를 말한다.

### 2. 등록신청 서류 및 제출방법

#### 가. 등록신청 서류

-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
- 첨부서류
  - 유족명단(동일한 참여자에 여러 명의 유족이 있는 경우)
  - 신청인의 부모·조부모·증조부모 또는 고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1부
  -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 1부
  -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  - 그 밖에 유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

#### 나. 제출방법

- 2018. 9. 5.부터 심의위원회 사무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
  - ※ 주소 :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사무처

### 3. 기타사항

- 자세한 사항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사무처 (☎ 063-538-2897)로 문의하거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(www.1894.or.kr) 참고

##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등록 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	
신청인	성명(한자) ( )외	생년월일	
	주소		
	참여자와의 관계	전화번호( )	-
참여자	성명(한자)	출생연월일	성별 [ ] 남 [ ] 여
	( )	사망연월일	
	주소		
참여상황	참여일	당시 연령	당시 직업
	참여지역	참여자의 신상변동 (사망·부상·처형·행방불명 등)	
	참여내용 (구체적으로)	* 참여자의 참여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요약 기재 (지인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)	

「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

### 처리과정

